

스포츠인권에 대한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주관적 인식 유형

임현주*(국민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Q방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157명의 Q모집단을 선정하였다. Q모집단에서 수집된 진술문들은 반복되는 것은 통합하고 특성이 약한 것은 제외시키는 작업을 거쳐 최종 20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Q표본을 선정한 후 43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Q표본 분류표와 Q카드를 작성하게 하였다. Q분류 결과는 Q소팅 과정을 통해 점수화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QUNAL-PC 프로그램을 통해 Q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태권도 선수들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은 폭력노출 방지형, 사생활 보호 추구형, 학업기회 보장형, 청렴결백 중시형, 공평한 기회 보장형과 개인의견 존중형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일치 진술문은 인간다운 대우를 보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포츠인권에 대한 태권도 선수들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스포츠인권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스포츠인권, 태권도 선수, 주관적 인식

* dignity@kookmin.ac.kr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인간의 중요한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하고, 스포츠를 보고, 스포츠를 말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스포츠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면서 스포츠에 대한 권리는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우리사회에서는 스포츠에 관한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보장할 것인지, 스포츠권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나아가 스포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기복, 2017).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은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현상이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반인권적인 문제들은 스포츠의 발생시점에서부터 동반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스포츠선수에 대한 차별이나 구타나 폭력을 ‘엘리트스포츠’의 구조적 병폐로(정희준, 2007) 치부해왔으며,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와 기사들을 접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적당한 용인과 묵인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으로의 치부는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하기(김진훈, 2018)에 이르렀으며, 점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1139명중 898명이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 중 성폭력 경험자도 818명으로 71.8%에 이르고 있다(정승재, 2012)고 보고되었다. 또한 국가대표선수들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교육적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것” 이라고 대답하였다(남병집, 1994)고 나타났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자유와 권리이며(김진훈, 2018) 스포츠권은 헌법상에서 기본권으로서 최고의 규범성을 유지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이며, 행복추구권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권이기

도 하다(정승재, 2012). 따라서 스포츠가 인권의 한 부분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과 사회권의 확립을 위한 스포츠의 존재가치가 발견될 수 있다면 스포츠는 당당하게 인권의 한 범주에서 보장되어지는 ‘스포츠권’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자체를 인권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김현수, 2018).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인권선언이나 헌장을 통해서 스포츠를 하나의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고기복, 2017)는 사실이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차원의 예방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정용우, 오현택, 2015).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는 대한체육회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인권익센터’가 있으며, 2015년부터 실시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사전’ 교육을 포함시켰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또한 스포츠인권익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스포츠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폭력 및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해 책자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하고(정승재, 2012)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익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2010년 469건에서 2013년 617건으로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의진, 2014). 따라서 스포츠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용우, 오현택, 2015). 그러나 스포츠의 집단성, 경쟁성과 폐쇄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이러한 현상이 입법적으로 해결 될 수 없다(정승재, 2012)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인권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학생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대한 흥덕기, 류태호(2007), 강구민(2010), 김상겸(2009)과 임수원(2011)의 연구들이 있고, 스포츠에서 폭력과 인권을 다룬 정승재(2012), 최병문(2009), 정승재(2012)김혁(2016)의 연구들이 있다. 또한 스포츠의 사회문화와 인권을 다룬 김양례(2010), 허현미(2010), 허현미a(2011)와 정구철(2013)의 연구들이 있고, 스포츠에서 성폭력과 인권을 다룬 정재용(2008), 김미숙, 정희석(2009), 윤상민(2011), 이세형(2013), 구송광, 원영신(2014)의 연구가 있다. 스포츠인권과 법 또

는 스포츠인권과 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이기철(2006), 박재우, 박현욱(2010), 정승재(2012), 박순오, 김종결(2014)과 윤석민(2015)의 연구가 있으며, 홍덕기(2008)와 임수원(2011)은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를 발표하였다.

운동선수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중 장원일(2016)의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90명에게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박순오(2010)는 수도권 지역 태권도 실업 선수 48명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인식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김석현(2016)의 연구에서는 엘리트 스포츠선수의 인권의식에 따른 자기관리와 스포츠일탈, 성취목표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이장일, 한민규(2017)의 연구에서는 엘리트 장애인운동선수의 인권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허현미(2011b)의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선수들이 인식하는 스포츠인권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러나 인식은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적 관점에서 운동선수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스포츠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기 위해 Q방법론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Q방법론은 객관성과 주관성을 연구할 수 있고, 주관적 인식들 사이에 공통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연구방법이며 연구대상의 주관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김홍규, 200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스포츠인

권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Q 방법론으로 설계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수행되었으며, Q모집단을 대상으로 진술문을 수집하여 Q표본을 선정하였고, P표본을 대상으로 Q표본 분류표와 Q카드를 작성하게 하였다. Q분류 결과는 컴퓨터에 입력하였고 Q소팅 과정을 통해 점수화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UNAL-PC 프로그램을 통해 Q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1) Q모집단(Q-population) 구성

본 연구의 Q모집단은 2018년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선수 중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157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2019

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등학교 종목별 신체 폭력 실태 피해 현황조사에 의하면, 신체폭력 경험자 총 2832명 중 태권도 선수가 602명으로 10종목 중 야구/소프트볼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태권도 선수들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는 것이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Q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 Q표본(Q-sample) 선정

본 연구에서는 Q표본을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논문 및 기사 등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1차 진술문을 수집하였으며, 10명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인권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총 168개의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또한 157명의 Q모집단으로부터 수집된 Q진술문을 바탕으로 Q방법론으

표 1. Q진술문

Q진술문	
1.	기계처럼 운동하지 않는 것
2.	떳떳하게 사는 것
3.	사생활을 보호 받는 것
4.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것
5.	선수를 관리 해주는 것
6.	제 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것
7.	무시하지 않는 것
8.	남녀차별이 없는 것
9.	성적보다 안전을 중요시 하는 것.
10.	비리 없이 깨끗한 분위기
11.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
12.	패배한 후에도 벌 받지 않는 것
13.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14.	인간다운 대우를 보장 받는 것
15.	승패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
16.	눈치 보지 않는 것
17.	여가 시간을 보장 받는 것
18.	은퇴를 걱정하지 않는 것
19.	학업을 중시하는 것
20.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

로 논문을 쓴 경험이 있는 박사 2명과 체육대학 교수 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회의를 거쳐 Q모집단에 포함된 진술문들을 숙독하면서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은 특성이 약한 것은 제외시키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통합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20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Q진술문은 <표 1>과 같다.

3) P표본(P-sample) 선정

Q방법론에서 P표본의 수가 커지게 되면 한 유형에 많은 수의 사람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징을 나타내기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개개인의 차이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김홍규, 2008) 표본의 수에 대한 제약이나 특정 표본 선정 방법이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특정한 그룹에 의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남28, 여15), 거주지역(서울24, 경기도19), 학년(1학년25, 2학년18)에 있어서 최대한 편향되지 않도록 최종 43명으로 P표본을 선정하였다.

4) Q분류(Q-sorting)

선정된 Q표본 20개의 진술문은 Q분류를 위해서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이때 Q표본 분류표는 연구 대상에 의해 7점 척도로써 가장 동의하는 +3(G)에서부터 가장 동의하지 않는 -3(A)까지 분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에게 추가적인 개방형 질문과 면담 과정을 거쳤다. Q표본 분류표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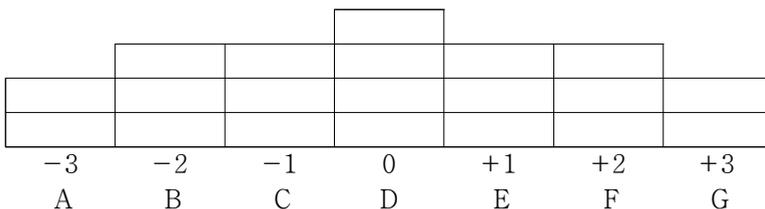


그림 2. Q 분류표와 점수구성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QUNAL-P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구하고 Varimax 회전을 통해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P표본으로 선정된 43 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부호화 작업은 Q 가장 동의하는 항목 +3(G)에 7점으로 시작하여 +2(F)에 6점, +1(E)에 5점, 0(D)에 4점, -1(C)에 3점, -2(B)에 2점, -3(A)에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점수화 하였다. 이를 자료 파일로 입력한 뒤 QUNAL-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Eigen value 1.00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여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유형을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각 유형에서 대표적으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의 진술문을 추가로 서술함으로써 각 유형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Ⅲ. 연구결과

1. Q유형의 형성

QUANL-PC 프로그램 분석결과, 태권도 선수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유형은 여섯 개의 유형(factors)으로 분류되었다. 이 결과는 각 유형마다 운동선수 스포츠인권에 대해 각각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네 개의 유형은 전체변량의 47.13%를 설명하고 있다.

표 2. 요인(유형)별 Eigenvalue와 변량의 백분율

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아이겐 값(Eigenvalues)	9.1141	4.4447	3.4855	3.2220
변량의 변화율(Percentages of Total Variance)	.2120	.1034	.0811	.0749
누적량(Cumulative)	.2120	.3153	.3964	.4713

각 요인의 설명력을 보면 유형 1은 21.20%, 유형 2는 10.34%, 유형 3은 8.11%, 유형 4는 7.49%로 총 4개의 유형(types)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아이젠 값과 변량 백분율은 <표 2>와 같다. P표본 유형별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일수록 기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으로서 유형 내에서 가장 전형적인 특성을 지닌 대표성을 띤 선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총 43명의 P표본 중 유형 1이 17명, 유형 2에 8명, 유형 3은 11명, 유형 4는 3명, 유형 5는 2명 유형 6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표본의 유형별 인자 가중치는 <표 3>과 같다.

표 3. P표본의 유형별 인자가중치

유형	NO	유형	NO	
유형1 (N=17)	P 05	유형3 (N=11)	P 02	1.0699
	P 10		P 04	.3521
	P 11		P 08	.7081
	P 12		P 13	.7735
	P 14		P 20	.5385
	P 16		P 23	.8412
	P 17		P 25	.9203
	P 21		P 26	.7083
	P 27		P 28	1.1159
	P 29		P 38	.2831
	P 30		P 42	.5884
	P 35	유형4 (N=3)	P 19	.7441
	P 36		P 33	1.5132
	P 37		P 40	.7795
	P 39	유형5 (N=2)	P 01	.6245
	P 41		P 07	.6018
	P 43	유형6 (N=2)	P 18	.7276
P 03	P 22		1.1879	
유형2 (N=8)	P 06			
	P 09			
	P 15			
	P 24			
	P 31			
	P 32			
	P 34			

2. 인식 유형별 해석

1) 유형 1 : 폭력노출 방지형

이 유형에 속한 17명 중 8명이 인자가중치가 1을 넘었으며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1.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표준점수1.87)’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고 있고, ‘5. 선수를 관리해주는 것(표준점수-1.53)’에 가장 부정적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형 1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Item descriptions for type 1(above +1)		표준점수(z-score)
11.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	1.87
12.	패배한 후에도 벌 받지 않는 것	1.44
4.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것	1.22
13.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1.07
Item descriptions for type 1(above +1)		표준점수(z-score)
1.	기계처럼 운동하지 않는 것	-1.05
19.	학업을 중시하는 것	-1.36
7.	무시 받지 않는 것	-1.53
5.	선수를 관리 해주는 것	-1.53

즉, 유형 1에 속하는 선수들은 스포츠인권에 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유형은 ‘폭력노출 방지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인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운동부 생활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크고 작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P-3)

시합에서 지거나 하면 신체훈련이라는 명목아래 벌을 받기도하고 또 누군가 크게 잘못을 하면 단체 기합을 받죠. 스포츠인권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 아닐까요? (P-17)

2) 유형 2 : 사생활 보호 추구형

이 유형에 속한 8명 중 2명이 인자가중치 1을 넘었으며,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 사생활을 보호 받는 것(표준점수1.95)’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고 있고, ‘20.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표준점수-1.73)’에 가장 부정적 동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형 2에 속하는 선수들은 스포츠인권에 대해 사생활을 보호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 2는 ‘사생활 보호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인권하면 권리를 보호해주는 거니까, 사생활 침해를 막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화가 많이 오거나하면 나도 모르게 눈치가 보여요. 여자 동료들과 전화를 해도 연애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을 받기도 하고요. (P-2)

표 5. 유형 2가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Item descriptions for type 1(above +1)	표준점수 (z-score)
3.	사생활을 보호 받는 것	1.95
17.	여가 시간을 보장 받는 것	1.91
11.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	1.52
	Item descriptions for type 1(above +1)	표준점수 (z-score)
19.	학업을 중시하는 것	-1.43
20.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	-1.73

3) 유형 3 : 학업 기회 보장형

이 유형에 속한 11명 중 2명이 인자가중치가 1을 넘었으며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 학업을 중시하는 것(표준점수2.12)’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고 있고, ‘20.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표준점수-1.84)’에 가장 부정적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유형 3에 속하는 선수들은 스포츠인권에 대해 학업을 중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은 ‘학업 기회 보장형’ 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인권이 보장되면 제일먼저 공부를 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권보장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P-5)

표 6. 유형 3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Item descriptions for type 1(above +1)		표준점수 (z-score)
19.	학업을 중시하는 것	2.12
4.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것	1.48
11.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	1.33
Item descriptions for type 1(above +1)		표준점수 (z-score)
7.	무시하지 않는 것	-1.42
2.	떳떳하게 사는 것	-1.77
20.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	-1.84

4) 유형 4 : 청렴결백 중시형

이 유형에 속한 3명 중 1명이 인자가중치 1을 넘었으며,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 비리 없이 깨끗한 분위기(표준점수1.57)’ 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고 있고, ‘1. 기계처럼 운동하지 않는 것 , 승패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표준점수-1.56)’ 에 부정적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유형 4에 속하는 선수들은 스포츠인권에 대해 비리 없이 깨끗한 분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은 ‘청렴결백 중시형’ 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인권이라고 하면 비리가 없어지는 거가 떠올라요. 뒤에서 이런이런 이야기 가 있더라 하면서 수근 대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스포츠인권이 보장되면 모든 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깨끗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P-21)

표 7. 유형 4가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Item descriptions for type 1(above +1)		표준점수 (z-score)
10.	비리 없이 깨끗한 분위기	1.57
4.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것	1.38
11.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	1.21
17.	여가 시간을 보장 받는 것	1.05
9.	성적보다 안전을 중요시 하는 것.	1.03
Item descriptions for type 1(above +1)		표준점수 (z-score)
7.	무시하지 않는 것	-1.20
5.	선수를 관리 해주는 것	-1.23
15.	승패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	-1.56
1.	기계처럼 운동하지 않는 것	-1.56

5) 유형 5: 공평한 기회 보장형

이 유형에 속한 2명 중 인자가중치 1을 넘은 경우는 없었으며,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것(표준점수1.49)’ 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고 있고, ‘16. 눈치 보지 않는 것, 기계처럼 운동하지 않는 것(표준점수-1.86)’ 에 가장 부정적 동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유형에 속한 선수들은 스포츠인권에 대해 공평한 출전기회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은 ‘공평한 기회 보장형’ 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인권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도 규칙이 있듯이 모든 게 공평해야 불만이 생기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니까

요. (P-11)

표 8. 유형 5가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Item descriptions for type 1(above +1)		표준점수 (z-score)
4.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것	1.49
15.	승패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	1.14
8.	남녀차별이 없는 것	1.12
19.	학업을 중시하는 것	1.10
Item descriptions for type 1(above +1)		표준점수 (z-score)
2.	떳떳하게 사는 것	-1.11
7.	무시하지 않는 것	-1.14
17.	여가 시간을 보장 받는 것	-1.50
1.	기계처럼 운동하지 않는 것	-1.86
16.	눈치 보지 않는 것	-1.86

6) 유형 6 : 개인 의견 존중형

이 유형에 속한 2명 중 1명이 인자가중치 1을 넘었으며,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3.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표준점수1.64)’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고 있고, ‘17. 여가 시간을 보장 받는 것(표준점수 -1.88)’에 가장 부정적 동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유형에 속한 선수들은 스포츠인권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은 ‘개인 의견 존중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제일 답답한 건 알아도 말할 수 없고, 의견이 있어도 자유스럽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배들은 말하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스포츠인권이 보장되면 하고 싶은 말도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P-31)

표 9. 유형 6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Item descriptions for type 1(above +1)		표준점수 (z-score)
13.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1.64
3.	사생활을 보호 받는 것	1.49
16.	눈치 보지 않는 것	1.40
6.	제 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것	1.25
7.	무시하지 않는 것	1.25
Item descriptions for type 1(above +1)		표준점수 (z-score)
9.	성적보다 안전을 중요시 하는 것	-1.02
18.	은퇴를 걱정하지 않는 것	-1.10
8.	남녀차별이 없는 것	-1.40
17.	여가 시간을 보장 받는 것	-1.88

3. 공통일치 진술문(Consensus Item)분석

스포츠인권에 대한 태권도 선수들의 인식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도출된 여섯 가지 유형인 폭력노출 방지형, 사생활 보호 추구형, 학업 기회 보장형, 청렴결백 중시형, 공평한 기회 보장형, 개인 의견 존중형의 공통일치를 보이고 있는 진술문은 <표 10>과 같이 ‘인간다운 대우를 보장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0. 공통일치 진술문과 평균 표준점수

공통일치 진술문 (Consensus items description)		평균 표준 점수
14	인간다운 대우를 보장 받는 것.	0.6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인권에 대한 태권도 선수들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력노출 방지형(1유형)’은 스포츠인권에 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룹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폭력과 성폭력, 비교육적인 형태, 편견과 차별 등 반 인권적인 상황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한 김진훈(2018)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스포츠 분야에서는 운동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정희준, 2007)하고 묵인하려는 문화에 대한 심각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들만 주목을 받을 뿐, 대부분의 인권침해 사례들은 은폐되고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는 현실(박순오, 김종걸, 2014)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선수, 학부모와 지도자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인권에 대한 연수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생활 보호 추구형(2유형)’은 스포츠인권에 대해 사생활을 보호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과위주의 엘리트스포츠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부와의 차단을 강요하고 있다는 정승재(201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운동부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공부와 바깥 세계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보고한 박노자(200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백윤철과 김한양(2008)의 연구에서는 스포츠권에 대해 “한국과 일본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한국 헌법 10조의 인간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보장되고, 일본도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하여 보장된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두현(2009)의 연구에서는 스포츠는 신체적측면 뿐아니라, 정신적·사회적인 면에서도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스포츠기본권을 통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행복추구권의 맥락에서(김현수, 2018) 볼 때, 운동선수의 자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과 학생선수들이 유익한 여가시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업기회 보장형(3유형)’은 스포츠인권에 대해 학업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그룹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실적으로 학생선수들이 정규수업을 받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단축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심각한 학력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강병규(2002), 이상연과 안민석(200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학생선수를 ‘학생’을 주제로 놓고 보면, 학생으로서의 학습권이 중요(홍덕기, 류태호, 2007)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스포츠경쟁에서 이기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인식(강병규, 김영희, 2001)이 만연해 있다. 특히 물질주의가 만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학생선수를 학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로서만 인식하기 쉽기 때문에, 학생선수가 학습의 주체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식하는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렴결백 중시형(4유형)’은 스포츠인권에 대해 비리 없이 깨끗한 분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비리 없이 투명한 분위기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스포츠계의 이러한 비리나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문제점들은 엘리트 스포츠의 특수한 구조인 집단성과 폐쇄성으로 인한 문제(정승재, 2012)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스포츠는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패배해야 하는 경쟁 구조 속에서 우수함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지상주의를 조장하게 되고 스포츠의 근본적인 정신적 가치를 떨어뜨리는(김진훈, 2018)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승리

지상주의는 선수자신과 지도자에게만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사이에서도 당연시되는 문화로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2005)의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의 경우 구타와 같은 체벌이 경기력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5%로 나타났다. 또한 감독, 지도자, 선수와 학부모들 모두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체벌이 경기력향상에 기여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승재, 2012). 따라서 운동선수 뿐 아니라, 지도자와 학부모들이 스포츠를 경쟁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스포츠를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스포츠의 본연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평한 기회 보장형(5유형)’은 공평한 출전기회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룹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엘리트스포츠가 남성적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중·고등학교 운동선수 중 남자의 비율이 77%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정승재(201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가 남성문화의 전형이라는 공공연한 암묵적 사실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2년 미국에서 발표된 남녀평등교육법, 1975년 벨기에의 sport for all 헌장과 1994년 영국의 Brighton declaration 헌장들은 스포츠에서 차별의 철폐를 지향하고 있으며 1978년에 유네스코에서 제작한 ‘체육과 스포츠 국제헌장’은 체육과 스포츠가 모든 이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허현미, 2015). 따라서 더 이상 차별이 만연해지지 않도록 스포츠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견 존중형(6유형)’은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 운동부 내에서 지도자와 학생 혹은 학생들 간에 위계질서 속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한 정용우, 오현택(201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도자와 선수간의 ‘갑을 관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정태린, 조광민, 남삼백, 2012). 즉,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계가 추구하는

승리지상주의 정책에서는 선수와 지도자간의 상하 관계는 지도자의 어떠한 지시와 부당한 처우에도 선수는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구송관, 원영신, 2014)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 11조 제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다(박순오, 김종걸, 2014). 따라서 스포츠관련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타인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바뀌어야하고, 어떤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며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와 함께 타인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법·인권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정승재, 2012). 즉, 스포츠인권은 특정한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고 보장 받기 위해서는 스포츠인 뿐 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는 것이며 Q방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157명의 Q모집단을 선정하였다. Q모집단에서 수집된 진술문들은 특성이 약한 것은 제외시키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20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고 43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Q표본 분류표와 Q카드를 작성하게 하였다. Q분류 결과는 Q소팅과정을 거쳐 점수화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QUNAL-PC 프로그램을 통해 Q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태권도 선수들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은 폭력노출 방지형, 사생활 보호 추구형, 학업기회 보장형, 청렴결백 중시형, 공평한 기회 보장형과 개인의견 존중형으로 나타났다. 공통일치 진술문은 인간다운 대우를 보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2012)의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선수지도 매뉴얼’에서는

‘선수인권이란 모든 선수가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지나게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동등한 권리’로 인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체육 중·고등학교 재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동선수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78%의 운동선수들이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나타났다(박순오, 김종걸, 2014).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올바른 스포츠문화의 정착 및 제도와 정책 확립 등 스포츠인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선수, 지도자와 학부모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승리至上주의에서 탈피하여 과정중심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교, 중등학교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스포츠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며 코치교육 단계에서의 스포츠인권 관련 교육과정 개편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운동선수가 선수이기 전에 학생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유형을 조사하였으므로, 다양한 연구설계를 기반으로 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하여 품새와 시범영역에 걸쳐 다양한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한 현장연구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운동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스포츠인권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자료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며 스포츠인권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이론적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후속연구들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구민(2010).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헌법적 함의. **스포츠와 법**, 13(4), 101-120.
- 고기복(2017). 인권으로서 스포츠인권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4), 27-33.
- 곽은창, 김용규, 주병하(2001).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학습환경 실태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1), 1-16.
- 구승광, 원영신(2014). 엘리트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 **한국과학예술포럼**, 17, 33-41.
- 국가인권위원회(2019).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성)폭력 판례분석 결과발표 토론회**, 1-195.
- 김두현(2009). 스포츠안전권의 침해실태 및 예방대책. **스포츠와 법**, 13(4), 141-174.
- 김미숙, 정희석(2009). 독일 스포츠 성폭력 방지책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17(2), 11-28.
- 김상겸(2009). 학생선수의 인권과 일반학생의 학습권보장에 관한 연구: 스포츠교육이 정상화 관점에서. **스포츠와 법**, 12(1), 11-36.
- 김석현(2016). **엘리트 스포츠선수의 인권의식과 자기관리, 스포츠일탈, 성취목표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양례(2010). 학생운동선수 인권 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3), 37-53.
- 김진훈(2018). 스포츠인권과 반도핑(도핑방지)의 인문학적 성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4, 25-37.
- 김혁(2016). **스포츠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현수(2018). 스포츠는 인권인가? **한국체육철학회지**, 26(1), 19-34.
- 김홍규(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스북스.
- 남병집(1994).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출전 국가대표선수들의 의식조사. **한국체육**

학회지, 34(4), 271-282.

대한체육회(201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선수지도 매뉴얼. 서울: 대한체육회 선수권익 보호팀.

문화체육관광부(2014, 7월 23일).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 설명회. 서울: 올림픽파크텔.

박노자(200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상황**. 한국인권재단.

박순오(2010). **태권도 선수의 인권보호 인식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박순오, 김종걸(2014).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침해와 효과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2(2), 33-44.

박재우, 박현욱(2010). 한국의 스포츠 정책변동 사례연구: 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와 학교운동부 인권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8(2), 17-34.

백윤철, 김한양(2008). 한국과 일본의 헌법상 장애인 sports권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11(3), 75-98.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2005). **선수에 대한 폭력행위 실태 및 근절대책**. 대한체육회.

신의진(2014, 10월 14일). 폭력과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스포츠선수! 인권보호 조치 시급! 국회의원 신의진 보도자료.

윤상민(2011).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 규제와 대책. **스포츠와 법**, 14(1), 59-84.

윤석민(2015). 장애인 운동선수의 인권확립과 복지향상 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3(1), 1-12.

이기철(2006). 프로운동선수와 인권보호: 프로야구규약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6(1), 59-94.

이세형(2013). 스포츠인권, 그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위하여! 선수(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법. **스포츠와 법**, 19(1), 43-64.

이장일, 한민규(2017). 엘리트 장애인운동 선수의 인권인식에 관한 연구. **스포츠사이언스**, 34(2), 17-25.

임수원(2011).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의 논리적 근거. **한국체육학회지**, 50(2),

45-57.

- 장원일(2016). **운동선수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정구철(2013). 스포츠 학습을 통한 Fair Play 인권교육에 대한 소고. **한국초등체육학회지**, 8(4), 151-165.
- 정승재(2012).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2012 학술 발표회 자료집**, 45-62.
- 정승재(2012). 스포츠권의 헌법상 지위-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5(3), 69-86.
- 정용우, 오현택(2015). 스포츠인권의 개념에 대한 기초 연구. **스포츠인류학연구**, 10(1), 27-46.
- 정재용(2008). 성폭력에 관한 스포츠인권 보고서. 서울: KBS 미디어.
- 정희준(2007). **여성을 위협하는 체육계의 구조적 폭력과 그 익숙한 관행, 그리고 대안**. 한국여성민우회 문화연대 공동주최 <스포츠 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이에 맞서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들> 토론회 자료집.
- 최병문(2009). 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대책. **스포츠와 법**, 12(4), 257-278.
- 허현미(2010).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인권 측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4), 145-160.
- 허현미(2011a). 한국형 스포츠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4), 145-161.
- 허현미(2011b) 인구사회학적 변인별 엘리트선수의 스포츠 문화와 인권에 관한 인식. **한국체육학회지**, 50(1), 35-44.
- 허현미(2015). 여성의 평등권, 건강권, 행복권 추구를 위한 스포츠 서비스 환경개선 전략.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9(3), 249-272.
- 홍덕기(2008). **학생선수의 인권에 관한 비판적 담론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홍덕기, 류태호(2007).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교육적 담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131-154.

ABSTRACT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 of High School Taekwondo Student Players on Human Rights in Sport

Im, Hyun-Ju(Kookmin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ubjective perception types of high school taekwondo student players on human rights in sport. One hundred fifty seven high school taekwondo student players located in S city and Kyung-gi area were selected for the subjects based on the Q methodology. Twenty Q statements extracted from the total of 210 Q statements after the experts consultation. The final 43 selections were surveyed to be forced distribution by the respondents to the statement of their positive, neutral, negative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total score 7 points. The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by utilizing the QUANL-PC program.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rived by the factors centered over 1.00 values. First, the perception types of human rights in sport of high school taekwondo student players were classified into 6 image types, violent exposed type, privacy-seeking type, academic opportunity guarantee type, honorable integrity type, equal opportunity guarantee type, and respect for individual opinions. Second, one positive Q-statements commonly formed among each types of the perception types of high school taekwondo student players on human rights in sport.

Key words: Human rights in sport, Taekwondo student player, Subjective Perception

논문투고일 : 2020.09.28.

심사일 : 2020.10.10.

심사완료일 : 2020.10.30.